

## [기술특급 산림기술자 법정교육 CPD 인정기준]

### □ 「기술사법 시행령」 [별지 제10호서식] 교육훈련 이수확인증의 형태(코드)

구 분		산림기술자 법정교육(전문) 인정여부	비 고
기 본	윤리·안전	전 체 인정	
	기 타	*일부인정	CPD 문구가 명시되어있는 교육 (분기 또는 분회 교육[CPD] 등)
전문교육		전 체 인정	
자율학습		*일부인정	CPD 문구가 명시되어있는 교육 (분기 또는 분회 교육[CPD] 등)
기 타		*일부인정	CPD 문구가 명시되어있는 교육 (분기 또는 분회 교육[CPD] 등)

#### ※ 비고

1.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1항 [별표 1]3의나에 따라 이수한 교육·훈련 시간에 해당하는 전문교육 시간 면제
2. 「기술사법 시행령」 [별지 제10호서식] 교육훈련 이수확인증에서 인정되는 교육은 이수 학점으로 산림기술자 교육·훈련 시간 인정
3. 『산림기술자 교육·훈련에 관한 세부사항』 제9조제1항에 따라 교육·훈련 시간에 해당하는 전문교육 시간을 면제하므로, 해당 교육기간에 이수한 교육만 인정 가능
4. 「기술사법 시행령」 [별지 제10호서식] 교육훈련 이수확인증에 따른 취득학점 인정 시 형태(코드) '전문교육' 및 '기본-윤리·안전' 외 교육은 CPD 문구가 명시되어있는 교육 (분기 또는 분회 교육[CPD] 등)에 한하여 산림기술자 법정교육 범위의 전문교육 인정